

## [두란노 아버지학교 미주본부 규정]

### 제 1 조 목적

미주 지역(북미, 남미 대륙의 각국가를 통칭)에서 두란노 아버지학교 운동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운영방향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 2 조 미주본부의 구성

#### 1. 미주본부 지도목사 :

사단법인 두란노 아버지학교 운동본부 이사장(이하 ‘사단 본부 이사장’)의 위촉을 받아 영적 코칭 리더십으로서 아버지학교의 비전을 따라 아버지학교 운동의 **영적 방향을 관리한다.**

#### 2. 미주 본부장:

가. 미주본부 운영위원회와 미주본부 지도목사의 추천과 미주본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사단 본부 이사장이 임명한다.

나. 비상근이며, 임기는 2 년이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

다. 미주본부 지도목사의 **영적지도**를 받으며, 본부의 관리 주체이며, 대외적으로 미주 본부를 대표한다.

#### 3. 본부 사무국 :

미주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해 미주본부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이 관장한다.

#### 4. 미주본부 이사회: 개인 이사와 기관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회 규정으로 정한다.

#### 5. 미주본부 운영위원회 : 미주본부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 6. 지역 지도목사 및 운영위원회: 지역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 제 3 조(헌신의 의무)

아버지학교의 모든 봉사자 및 사역자는 아버지학교에 헌신의 의무를 진다.

헌신의 의무라 함은 아버지학교 봉사자 및 사역자로서 타 봉사자에 모범이 되어야 하며, 봉사자 모임 및 개설되는 아버지학교에 각자의 은사에 따라 적극 참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 부 칙

1. 이 규정은 2007 년 3 월 1 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9 년 2 월 19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1 년 1 월 27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2 년 2 월 19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미주본부 이사회 규정]

### 제 1 조(목적)

두란노 아버지학교 미주본부(이하 '본부' 또는 '미주본부')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미주본부 이사회(이하 '회의')를 둔다.

### 제 2 조(구성)

1. 이 회의는 구성원에 따라 개인이사와 기관이사(교회 및 단체 대표)로 구성한다.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위촉하고, 이사장은 이사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부이사장, 이사회 총무 등을 선임할 수 있다.
2. 이사는 아버지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다른 직분도 겸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지명한 자가 회의를 주관한다. 단, 미주본부장 지명에 대한 승인을 위한 회의는 미주본부 지도목사가 주관한다.

### 제 3 조(자격)

1. 개인이사는 아버지학교를 수료한 자로 이사들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를 통해 임명된다.
2. 기관이사는 이사로 헌신하고 미주본부 지도목사가 위촉한 지역의 영향력 있는 사역 단체, 교회 또는 목회자로 선임한다. 기관 이사 모임은 본부 지도목사가 회의를 주관한다.

### 제 4 조(위촉과 회비)

이사는 기존 회원의 추천 또는 미주본부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이사는 월납 회비 미화 100 달러 이상, 또는(추가) 매년 1 월중에 연납 회비 미화 1 천달러 이상 기준의 회비를 납부한다.

### 제 5 조(임기)

이사장 : 비상근이며 임기는 2 년이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추가)  
이 사 : 임기는(1년) 2 년으로 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

### 제 6 조(회의 소집)

1. 정기 이사회는 11 월중에 이사장이 정한 장소에서 개최한다.
2. 미주본부장과 지도목사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 7 조(의결 정족수와 그 효력)

이 회의는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위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두로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 8 조(협의 및 의결사항)

1. 미주본부장 지명안에 대한 승인.
2. 신규 이사 위촉에 대한 승인.

3. 미주본부 운영위원 선임에 대한 승인.
4. 미주본부 운영위원회의 활동 보고서 검토 및 권고.
5. 미주본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보고와 승인.
6. 미주본부 재정 보고에 대한 검토 및 감사
7. 기타 미주본부장 또는 미주본부 지도목사가 상정한 의안.

부 칙

1.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3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9년 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1년 1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미주본부 운영위원회 규정]

### 제 1 조(설치목적)

두란노 아버지학교 미주본부의 주요활동에 대한 종합적 운영방향과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 실행하기 위하여 미주본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 2 조(구성)

1. 이 위원회는 제 3조의 아버지학교 운영위원과 미주본부(이하 '미주 본부'라 한다) 사무국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2. 미주본부장이 이 회의와 산하 위원회를 주관하며, 사무국장에게 운영을 위임하여 미주 본부장을 보좌하도록 할 수 있다.
3. 이 회의가 지명하는 봉사자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 3 조(선임과 해임)

1. 본부 운영위원은 본부 운영위원 3 인 이상이나, 미주본부의 추천을 받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미주본부장이 수시로 선임한다.
2. 아버지학교 헌신자로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본부 운영위원으로 헌신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부장 재량으로 해임할 수 있으며, 연속 2 회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총무의 1회 구두 경고 후, 2회 불참한 경우 해임된다. 질병과 타주 출장이나 아버지학교 봉사로 인한 불참은 제외한다.

### 제 4 조(임기)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 제 5 조(헌신의 의무)

미주본부 운영위원은 아버지학교에 헌신의 의무를 진다.

헌신의 의무라 함은 아버지학교 헌신자 및 사역자로서 타 봉사자에 모범이 되어야 하며, 봉사자 모임 및 개설되는 아버지학교에 각자의 은사로 적극 참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 제 6 조(회의 소집)

1. 정기회의는 연 4 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회의 일시와 장소와 방법은 본부장이 정하고 개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2.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 미주본부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 7 조(의안의 제안)

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은 구성원이나 미주본부 사무국이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 3 일 전까지 미주 본부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특별히 부의할 사항이 없으면 현안 문제들을 토의하고 결정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제 8 조(의안의 통지)

총무는 회의에 특별히 부의할 사항이 있을 때 회의 2 일 전에 구성원에게 통신(전화, e-mail)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 9 조(의결정족수와 그 효력)

1. 이 회의는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위원의 협의로 의결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서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무나 사무국에 의사표시를 참석으로 간주 할 수 있다.
2. 이 회의에서 최종의결된 안건은 미주본부 지도목사와 미주본부장의 협의를 거쳐 시행된다.

### 제 10 조(의결 및 업무)

1. 두란노 아버지학교 미주본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
2. 미주본부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향에 대한 사항
3. 신규 개설 지역의 지원
4. 후원금 모금 및 집행에 대한 사항
5. 미주대회, 각종 본부주관 행사 등 미주본부 사역에 대한 추진 및 지원
6. 미주본부 사역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7. 기타 미주본부장과 미주본부 지도목사가 제안한 안건

### 제 11 조(의결사항의 효력)

1. 미주본부, 각 지역 운영위원회 및 본부실행위원회는 본부 운영위의 의결사항을 수용할 의무를 진다.
2.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 회의의 의결사항을 수용할 수 없을 경우 해당 부서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재의 또는 대안을 구할 수 있다.

### 제 12 조(의결사항의 통보)

이 회의의 의결사항은 총무 또는 서기나 사무국이 미주본부 이사회와 각 지역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문서나 e-mail 로서 전달한다.

### 부 칙

1. 이 규정은 2004 년 1 월 19 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7 년 1 월 27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9 년 2 월 19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1 년 1 월 27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지역 운영위원회 규정 (표준안)]

### 제 1 조(설치목적)

각 지역 두란노 아버지학교(이하 “지역 아버지학교”라 한다)의 개설 및 봉사자 모임 등에 대한 종합적 운영과 관리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결정하고, 개설에 대한 사역과 재정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역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 2 조(구성)

1. 이 위원회는 3 회 이상 아버지학교가 개설된 지역에서 헌신된 봉사자의 추천으로 미주 본부에 건의하고 미주 본부장은 본부 지도목사와 상의하여 지역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추대하고, 미주본부장의 지명을 받는다.
3. 동기회장은 선출과 동시에 운영위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단, 회계 년도의 잔여 기간에 임기가 만료된다.
4. 위원장이 이 회의와 실행 위원회 등을 주관하며, 위원장은 총무 등을 선임하여 위원장을 돕게할 수 있다.
5. 지역 지도목사는 지역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하면 본부 지도목사와 본부장이 협의하여 지역 지도목사를 승인한다.
6. 미주 본부의 특성상 각 언어권의 지도 목사를 둘 수 있으며 이경우 언어권 지도 목사는 지역 목사와 동등하게 취급한다.

### 제 3 조(운영위원의 선임 및 해임)

1. 두란노 아버지학교 수료 후 헌신된 봉사자 중에서 기존 운영위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지역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2. 운영위원은 아버지학교 헌신자로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운영위원으로 헌신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성원의 과반수 참석에, 참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해임된다.
3. 연속 2 회, 또는 연간 3 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여 총무의 1 회 구두 경고 후, 2 회 불참한 경우 자동 해임된다 (단, 불참의 사유가 질병, 아버지학교 업무나 봉사 등 불가피한 경우 불참횟수에서 제외한다).

### 제 4 조(헌신의 의무)

구성원은 아버지학교에 헌신의 의무를 진다.

헌신의 의무라 함은 아버지학교 헌신자 및 사역자로서 타 봉사자에 모범이 되어야 하며, 봉사자 모임 및 개설되는 아버지학교에 각자의 은사로 적극 참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 제 5 조(운영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1 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1 년으로 하되 1 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안식 후 재선임된 경우 신임과 같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전체위원의 1/4 이상은 신임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6 조(지도목사의 자격 및 임기)

1. 자격 : 아버지학교를 수료한 자로 아버지학교 사역의 비전에 동참하고 지역에서 존경 받는 목회자중에서 지역 아버지학교에 자원하여 헌신할 목회자로 한다.
2. 지역운영위원회의와 전임 지도목사의 추천을 받아 미주본부에서 위촉한다. 지도목사의 임기는 1 년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미주본부 위촉으로 연임할 수 있다.
3. 지역의 필요에 따라 지도목사를 2 명이상 그룹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 7 조(지도목사의 역할)

1. 지도목사는 지역운영위원회의 구성원 자격을 가지며 미주본부를 대리하여 지역 아버지학교의 운영 전반에 관한 영적 코치 역할을 감당한다.
2. 개설 준비 모임에서 봉사자의 사명과 헌신에 대한 격려를 하고 사역에 대한 코칭을 감당한다.
3. 영적 코치로서 헌신자들의 신앙과 삶과 사역 전반에 영적인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 가도록 이끌며 돕는다.
4. 개설되는 아버지학교의 강사 선정과 관련하여 지역운영위원장의 협의 요청에 자문하고 미주본부에 강사를 추천하도록 도와야 한다.
5. 지도목사는 본부의 위촉을 받아 아버지학교 강사로 참여할 수 있다.
6. 지역 운영위원회나 아버지학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도목사는 미주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7. 지역 운영과 관련하여 아버지학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미주본부장은 본부 지도목사와 협의하여 지역 지도목사의 활동 정지를 행사할 수 있다.

#### 제 8 조(회의 소집및 운영)

1. 정기회의는 매월 1 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위원장의 재량에 일임한다.
2.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 운영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정기 회의는 1 부 예배, 2 부 회의 순서로 진행한다. 예배는 지도목사 또는 지도목사가 지명한 자가 인도한다. 2 부 회의는 위원장이 인도한다.

#### 제 9 조(의안의 제안)

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구성원이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 3 일전까지 총무는 지도목사와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특별히 부의 한(할) 사항이 없으면 주요 활동과 관련된 현안 문제들을 발의하고 토의하고 결정한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제 10 조(의안의 통지)

운영위원장은 총무와 함께 회의에 특별히 부의 할 사항이 있을 때 회의 2 일전까지 구성원에게 통신(전화, e-mail)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 11 조(의결 정족수와 그 효력)

1. 이 회의는 구성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전원의 합의를 통해 의결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로 위원장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2. 이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지역의 지도목사와 운영위원장의 최종 협의를 거쳐 시행되며 필요한 경우 지역의 지도목사는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재심의 요청된 안건은 참석한 운영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 제 12 조(의결 사항)

1. 지역 아버지학교 운영관리에 대한 구체적 사항
2. 지역 아버지학교의 개설 및 진행에 관한 사항(일정, 장소, 각 팀장 인선)
3. 개설 예정 사역에 대한 진행자와 강사를 본부에 추천(소정의 훈련 과정을 거친 분)
4. 개설된 지역 아버지학교의 사역과 재정(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의 선임과 해임
6. 각 실행위원회가 팀별로 계획 입안한 사항

#### 제 13 조(의결사항의 효력)

지역 아버지학교 관련자는 이 회의의 의결사항을 미주 본부의 규정 또는 관례에 배치하지 않는 한 수용할 의무를 진다.

#### 제 14 조(의결사항의 통보)

이 회의의 의결사항은 운영위원장이 봉사자 모임을 통해 발표하거나, 문서나 e-mail 로 전달한다. 또한 미주본부 사무국에도 통보한다.

#### 부 칙

1. 이 규정은 2004년 1월 19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7년 1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9년 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2년 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